

#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지침

제정 : 2023.08.21.

이 지침은 액시엄원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회사 내부통제기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고객과의 이해상충 발생 및 회사 정보교류 차단 부문을 명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이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 I. 정보교류 차단 대상에 관한 사항 및 미공개중요정보 여부 식별기준

### 1.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 1) 자본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3)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2. 미공개 중요정보 여부의 판단

- 1)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 39 조 제 2 항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를 식별합니다.
- 2) 업무 수행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인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 판단 의뢰 후 결정합니다.

###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 차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 신용정보
- 5)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정보
- 6)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II. 정보교류차단 부문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 1. 정보교류차단 부문 및 책임자

아래와 같이 상호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지정하고 책임자를 명확히 하여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 1) 집합투자업 운용부문 : 운용부문 총괄 책임자(자산운용본부 운용총괄)
- 2) 고유재산 운용부문 : 고유재산 운용부문 총괄 책임자(경영지원본부 팀장)

### 2.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 및 담당임원

- 1)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 준법감시팀
- 2)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 준법감시인

### 3.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및 예외적 교류허용 대상

회사는 임원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 · 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 및 예외적 교류허용 대상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 1)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 ① 대표이사
  - ②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 ③ 기타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의 임원
- 2) 예외적 교류허용 대상 및 기록관리
  - ① 정보교류차단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자
  - ②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펀드운용지원,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 담당자

-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한 경우는 이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최소보존기간(5년) 이상 유지·관리 (기록유지사항 : 정보수령자, 승인자, 정보수령 일시 및 해제일시, 교류정보 내용 등)

### III.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및 대응방안

#### 1. 거래제한 상품목록 지정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제한 상품목록으로 지정합니다. (기록유지 :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 1) 집합투자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중인 주식(주식관련사채 포함) 및 기타 금융투자상품
- 2) 임직원의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중인 주식(주식관련사채 포함) 및 기타 금융투자상품
- 3) 그 외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 2.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되는 거래의 유형 및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유형                                    | 대응방안                                                                                                                                                                                                                                                                                                                                                                   |
|-----------------------------------------|------------------------------------------------------------------------------------------------------------------------------------------------------------------------------------------------------------------------------------------------------------------------------------------------------------------------------------------------------------------------|
| 집합투자재산 및 고유재산간의 자산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교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상품에 대해 거래제한 목록지정</li> <li>✓ 거래제한 목록에 대하여는 임직원 자기매매 제한 등 조치</li> <li>✓ 고객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제한 상품 거래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필요</li> <li>✓ 사무공간 분리, 회의록 작성, 전산시스템 등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등 효율적 방법 선택 시행</li> <li>✓ 각 부문간 부문별 책임자 지정 및 관리</li> <li>✓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li> <li>✓ 관련 행위 조사 후 대응 후속조치 시행</li> </ul> |
| 미공개 중요정보 조사분석 자료를 이용한 고객자산 또는 고유자산 매매거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인지 즉시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제한 목록 지정</li> <li>✓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고 자기매매 제한 등 조치</li> <li>✓ 관련 행위 조사 후 대응 후속조치 시행</li> </ul>                                                                                                                                                                             |

#### IV. 이해상충방지 정책 및 조치방안

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과 조치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 정책 지침
2.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설정
3.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장치 설치 운영
4.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 설치 운영
5.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6. 임직원에게 대한 주기적인 내부통제 교육 실시
7.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교류차단 정책 공시
8.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 적정성 여부의 주기적인 점검 실시 등.